

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. 6. 10 선고 2014가단46346(본소), 2014가단46421(반소) 판결
[계약금반환청구의 소 · 매매대금반환]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 A

피고(반소원고) 주식회사 스노우라인

변론 종결 2015. 4. 22.

판결 선고 2015. 6. 10.

주 문

1. 원고(반소피고)는 피고(반소원고)에게 3,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. 1. 10.부터 2015. 6. 10.까지는 연 6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(반소피고)의 본소 청구와 피고(반소원고)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(반소피고)가 모두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본소: 피고(반소원고, 이하 '피고'라고만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'원고'라고만 한다)에게
1,129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. 5. 7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

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반소: 원고는 피고에게 3,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본소 및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.

1. 기초사실

가. 피고 회사는 2012. 5. 21. 독일 Fendt사에 SAPHIR 495SKM 카라반(이하 '이 사건카라반'이라 한다)에 관한 발주서를 제출하여 2012. 8. 22.경 이 사건 카라반 1대를 마산세관을 거쳐 인도받았다. 이 사건 카라반의 모델명인 "SAPHIR 495SKM"은 독일Fendt사가 2012년경에 생산한 제품으로서 다른 연식이 존재하지 않는다.

나. 그런데 이 사건 카라반은 장기간 판매가 되지 않았고 차량의 외관에 찌그러짐 등의 일부 손상도 있는 상태로 평택시 오성면 죽리에 있는 피고 회사 직영 매장에 계속전시되어 있었다.

다. 원고는 2014. 4. 19. 피고 회사의 위 직영 매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카라반을 확인하였고, 이후 두 차례 더 위 매장 및 피고 회사 본사를 방문하여 피고 회사의 담당직원인 B으로부터 다른 캠핑용 차량 10여 대와 이 사건 카라반의 사양 및 가격 등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2014. 5. 1. 피고 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(이하 '이 사건 매매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(1) 모델명: SAPHIR 495SKM

(2) 옵션: 알루미늄 휠, 45L 물통, 오토 무브, 어닝, 밧데리, 솔라 충전, 샤워 꼭지, 가스통 2개

(3) 매매대금: 총 4,229만 원, 계약금 1,229만 원은 2014. 5. 7. 지급, 중도금 1,500만원은 2014. 6. 7. 지급, 잔금 1,500만 원은 2014. 6. 30. 지급.

(4) 동시이행: 잔금 수령과 동시에 이 사건 카라반과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인도.

(5)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카라반의 제품사항에 관하여 고지하여야 하고, 원고는 피고 회사가

고지한 제품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, 고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후일 피고 회사에게 일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.

(6) 해약금: 원고의 사유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.

라.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후 곧바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솔라 충전 장치 등의 옵션을 설치하였고, 원고는 2014. 5. 7. 계약금 중 1,129만 원을 피고 회사에게 송금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2, 3호증, 을 제3, 4, 7, 8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 및 영상, 증인 B의 증언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이 사건 카라반을 구입할 당시 피고 회사 직원 B로부터 기망당하여 차량의 연식이 2013년식이라고 알고 있었다.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금을 지급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이 사건 카라반의 연식이 2012년식임을 알게 되었다. 이에 따라 원고는 2014. 5. 14. 위 B, 2014. 5. 15. 피고 회사 대표에게 각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통보하였고, 위 취소의 의사표시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소장부분의 송달로 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 따라서 피고 회사는 사기 또는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따라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매매계약금 1,129만 원을 반환하여야한다.

나. 판단

1) 우선 이 사건 카라반 연식의 기망 여부와 관련하여 살피건대, 이 사건 카라반이 본래 2012년에 생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. 그러나 갑 제4, 5, 6, 8호증의 각 기재, 증인 B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처음부터 이 사건카라반의 연식이 마치 2013년식인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

2) 다음으로 이 사건 카라반의 연식과 관련하여 원고의 의사표시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.

이 사건 카라반의 매매는 피고 회사의 직영 매장에 전시된 카라반을 특정하여 매매한 것으로서, 카라반의 연식은 원고가 이를 매수하게 된 동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,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,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,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(대법원 1999. 4. 23. 선고 98다45546 판결 참조).

한편 일반적으로 이 사건 카라반과 같은 캠핑용 차량이나 건설기계 등 감가상각 비율이 큰 매매목적물의 경우 연식의 차이에 따라 시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식은 당해 매매목적물의 가격을 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기는 한다.

그러나 위 기초사실 및 앞에서 든 증거들과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① 이 사건 카라반과 같이 매장에 장기간 전시되어 있었던 차량의 경우 연식 외에도 성능,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므로, 오직 연식의 차이가 매매계약 체결의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, ② 더욱이 이 사건 카라반의 모델명인 SAPHIR 495SKM은 독일 Fendt사가 2012년경에 생산한 제품에 한하는 것으로서 모델명이 특정된 이상 연식에 따라 카라반의 종류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는 점, ③ 원고는 약 3주 동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카라반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가 보유한 캠핑용 차량을 모두 둘러본 후 이 사건 카라반을 특정하여 매수한 점, ④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카라반의 연식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, 피고 회사의 직원인 B이 이 사건 카라반의 연식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원고에게 이 사건 카라반을 판매한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카라반의 연식에 관하여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, 이 사건 카라반의 연식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매수의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, ⑤ 원고는 이 사건 카라반을

매수하면서 직접 이 사건 카라반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카라반 외관의 손상 등을 이유로 고가의 옵션 설치를 요구하는 등 이 사건 카라반의 연식 외에 외관, 성능, 옵션 설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카라반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, ⑥ 원고는 2014. 5. 9.경 피고 회사 측에 연식을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고 주장(이 법원에 제출한 2015. 1. 19.자 준비서면, 2015. 4. 22.자 준비서면 참조)하고 있는데, 이는 원고가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 회사 직원인 B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카라반과 관련한 운전면허시험 응시비용을 요구한 행동과 모순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, 원고가 이 사건 카라반의 연식에 착오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이를 표시된 동기의 착오로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, 원고의 위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.

3.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1) 매매대금 지급청구 부분

위 기초사실에 의하면,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잔액 3,100만 원(= 4,229만 원 - 기지급된 계약금 1,129만 원)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)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부분

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나(민법 제467조 제1항), 추심채무에 있어서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할 경우 채무자로서는 인도할 목적물을 채권자가 추심하러 온다면 언제든지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이를 채권자에게 통지하면 되고(민법 제460조 단서 등 참조),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잔대금의 지급을 미루는 등 소유권이전등등록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도 그에 상응한 이행의 준비를 하면 족하다(대법원 2001. 12. 11. 선고 2001다36511 판결 참조).

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,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3,100만 원에 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이 사건 카라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등록서류

제공 의무에 관한 이행을 제공하여야 하는바,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 회사의 사기 또는 착오에 기하여 취소되었거나 원고의 해약금에 기한 계약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변제받기를 거절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, 피고 회사가 이행준비를 완료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한 이 사건 2015. 1. 6.자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. 1. 10.부터 원고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봄이 상당하다.

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 3,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2015. 1. 10.부터 그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(한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반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 원고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주장하나, 피고 회사는 이 사건 2014. 10. 8.자 준비서면, 2014. 10. 27.자 반소장에서 각 이 사건 카라반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를 특정하지 않은 채 이행 제공을 하였으므로, 위 각 서면의 송달을 두고 적법한 이행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, 달리 다른 시기에 적법한 이행 제공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, 피고 회사의 2015. 1. 9.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).

나.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

이에 대하여 원고는, 원고의 본소 청구가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되지 않더라도,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지급한 계약금 1,129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약금 조항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원고가 이 사건 본소에서 패소하여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, 또한, 매매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, 다만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제를 할 수 있기는 하나, 당사자가 계약금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,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바(대법원 2008. 3. 13.

선고2007다73611 판결 참조),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의 합계가 1,229만 원임에 도

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위 계약금 중 일부인 1,129만 원만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,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계약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해약금을 근거로 하여 해제를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,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(또한,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,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후 이 사건 카라반에 여러가지 옵션을 설치하는 등 이행에 착수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,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행사할 수 있는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을 원고가 행사할 수도 없다).

다. 소결론

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매매대금 3,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. 1. 10.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5. 6. 10.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,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며,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박상인